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 · 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964
----------	-------

발의연월일 : 2025. 12. 5.

발 의 자 : 최혁진 · 복기왕 · 민형배
김기표 · 김우영 · 김정호
김준형 · 정혜경 · 김준혁
김종민 · 김영배 · 한창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우선 구매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우선 구매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보다 정확하게 명시해줄 필요성이 있고, 우선 구매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물품 · 용역 · 공사 등의 계약 체결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에 대한 계획 및 실적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면서도 공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 우선구매를 활성화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는 우선구매 계획 및 실적이 공개될 필요가 있음.

이에 우선 구매의 범위를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로 명시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계약시 사회적협동조합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이 우선구매 계획 및 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95조의2).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065호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의2제1항 중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생산품”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를 “공공기관의”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를 “사회적협동조합생산품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통보”를 “통보 및 공고”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우대할 수 있다.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을 종합

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1065호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9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제2호에 따른 <u>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 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 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 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 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u>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u>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 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 를 위한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기획예산처장관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u>	법률 제21065호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9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 ----- -----<u>공공기관의 장</u> (이하 이 조에서 “<u>공공기관의 장</u>”이라 한다)은 <u>사회적협동조 합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 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u> (이하 이 조에서 “<u>사회적협동 조합생산품</u>”이라 한다)----- -----. ② <u>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우대할 수 있다.</u> ③ <u>공공기관의-----사회적협 동조합생산품의-----</u> ----- ----- -----.

<u><신 설></u> ③ 제2항에 따른 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u>통보</u>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 -----<u>통보</u> 및 <u>공고</u>----- -----.
---	---